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고민정 · 김영호 · 임호선
박정현 · 김문수 · 김준혁
박상혁 · 박선원 · 김동아
조인철 · 문정복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④·⑤ (생략)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